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으로 안전점검 확대시행 필요



장 병 상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관리팀장



지방어항 전경 및 태풍현황

1. 머리말

수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어항이다. 어항이 안전해야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태·폭풍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어항 232억 5천만원, 지방어항 663억 38백만원, 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1,209억원이다.

다행히 104개 국가어항 기본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특)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정기점검결과를 토대로 10여개의 대상항을 선정하여 정밀점검(수중부 포함)을 하게 됨으로써 어항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재난예방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289개 지방어항과 492개 어촌정주어항이다. 국가 기간시설인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의 방재시설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 방재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이 재해사전 대비점검, 재해기간중 점검, 기타 점검 등 년3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항의 지정관리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예산,

인력, 기술력 부족과 시행에 대한 담당자들의 적극성 결여 등의 요인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의 기본시설인 어항에 대한 이 같은 안전 불감증은 자칫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할 재난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2. 어항시설 및 방재실태 현황

최근 이상기후 발생 및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여름철 태풍의 이동경로가 다양하게 변하고 태 · 폭풍 내습시 어항시설물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시설은 상대적으로 국가어항시설에 비하여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에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파랑 내습시 시설물의 단면 취약부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어항의 경우 그나마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에 비하여 국가에서 지정하고 (특)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안전점검을 위탁받아 매년 점검을 수행하는 등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시설물 피해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지방어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과 어항관리인원의 절대 부족으로 재해시 막대한 시설물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막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은 사전 안전점검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절대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줄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 인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특)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어항의 안전점검 추진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개요

1) 관련근거 및 목적

어촌 · 어항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한국어촌어항협회가 실시하는 위탁업무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국가어항 기본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수중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판단하고, 건설 당시의 기록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여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외관형태를 관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 ·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 예방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근거
- 시특법 : 제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자연재해대책법 :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조
 - 어촌 · 어항법 : 제58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 ※ 국가어항 기본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시설(1·2종시설)이 아니라 동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용하였음.

전국 시 · 도별 어항수

시 · 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부산광역시	2	14	14
인천광역시	5	15	6
울산광역시	2	4	13
경기도	-	5	8
충청남도	7	29	19
전라북도	6	12	-
전라남도	30	92	26
경상남도	17	63	345
경상북도	15	23	4
강원도	14	14	19
제주도	6	18	38
전국(계)	104	289	492

최근 5년간 어항시설물 피해현황(해양수산부)

(단위:개소, 백만원)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 및 소규모항	피해액	복구액
2002	6,476	18,251	19,168	43,895	63,024
2003	14,389	34,490	61,436	110,315	142,950
2004	72	330	1,165	1,567	1,691
2005	813	7,138	15,778	23,729	28,308
2006	1,504	6,129	23,356	30,989	56,212
계	23,254	66,338	120,903	210,495	292,185

제 언

2) 안전점검 개요

- 과업수행자 : (특)한국어촌어항협회 (위탁사업)
- 대상시설 : 국가어항 기본시설
- ※ '04년까지 각 지방청에서 수행하였으나 '05년부터 어촌·어항법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의거 (특)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 : 2005년 12월 8일(제10-2105호)
 - 항만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2007년 7월 30일(서울-87호)

3) 대상시설물

전체 정기점검 대상 국가어항 시설물은 2004년 하반기 602개소이었으나 어항추가개발에 따라 어항시설물이 계속 추가되어 2007년 하반기 점검대상 시설은 총 681개소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밀점검(수중부 포함)은 2005년과 2006년에 각 4개항을 선정 수행하였고, 2007년에는 6개항을 선정 조사하였으며, 2008년에는 10개항 계획 수립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나. 점검현황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은 104개 국가어항에 대한 연 2회의 정기점검과 선정 대상항에 대한 년1회 정밀점검(수중조사포함)으로 이루어진다. (특)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항만 및 해안분야, 해양

〈표-1〉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현황

구 분	어항수	대상시설물(개소)					비 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부산	2	13	15	15	15	15	
인천	5	11	15	15	16	16	
울산	2	16	15	17	17	17	
동해	14	61	60	60	60	67	
대산	7	36	34	43	44	46	
군산	6	39	41	42	42	42	
목포	18	106	113	118	123	125	
여수	12	93	110	117	117	122	
포항	15	90	79	81	83	83	
마산	17	107	108	113	113	114	
제주	6	30	33	34	34	34	
계	104	602	623	655	664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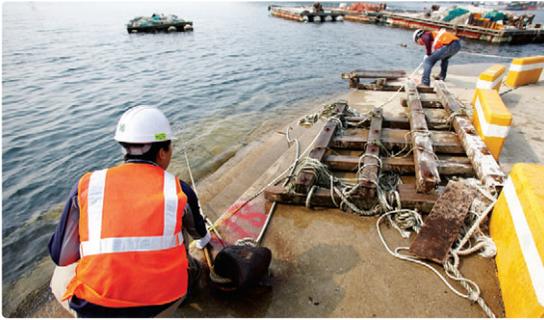
〈표-2〉 정밀점검(수중부포함) 실시 현황

연도별	항 명	시설명(상태등급)	비고
05 년도	방어진항	북방파제(B등급), 남방파제(B등급), 물양장A(B등급), 물양장B(B등급)	
	서거차항	동방파제(B등급), 서방파제(B등급), 물양장(B등급)	
	서망항	북방파제(B등급), 남방파제(B등급), 물양장(B등급)	
	청산도항	북방파제(B등급), 남방파제(C등급), 물양장A(B등급), 물양장C(A등급)	
06 년도	금진항	방파제(B등급), 물양장(B등급)	
	안도항	동방파제(B등급), 서방파제(B등급), 물양장A(B등급), 물양장B(B등급), 물양장C(A등급)	
	물건항	남방파제(B등급), 북방파제(B등급), 물양장(A등급)	
	김녕항	서방파제(A등급), 동방파제(A등급), 물양장A(A등급), 물양장B(B등급)	
07 년도	다대포항	물양장A(C등급), 물양장B(C등급)	
	덕산항	북방파제(B등급), 남방파제(B등급), 물양장(C등급)	
	여청도항	동방파제(B등급), 서방파제(B등급), 북방파제 (C등급), 물양장(B등급), 여객부두(C등급)	
	구산항	북방파제(B등급)	
	읍천항	북방파제(C등급), 남방파제(B등급), 물양장(C 등급), 선유장(B등급)	
	능포항	서방파제(B등급), 동방파제(B등급), 물양장(B등급)	
계	14개항	46개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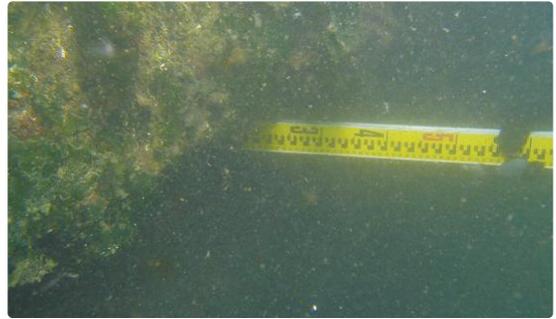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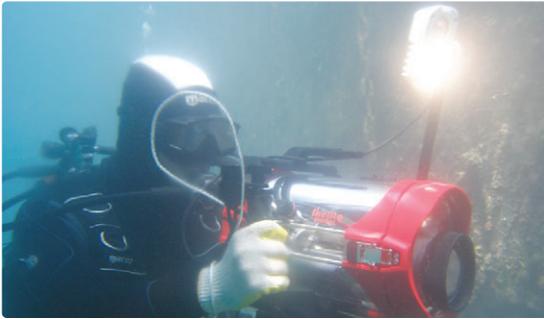
분야)로 등록하여 연구 및 설계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한 데 이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기술력을 강화하여 2007년 7월 30일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어항시설물에 안전점검업무를 고도화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시설물 비파괴 시험 및 측량



시설물 수중조사



수중조사 장면(수중촬영 및 손상부 측정)

신고번호 : 제 10 - 2105 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

①명 칭	한국어촌어항협회		
②대표자성명	배 병 삼	③주 민 등 록 년 호	
④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9번지	⑤연 락 번 호 (FAX, E-mail)	02) 3673-2851 02) 3673-2857
⑥기술부문 및 전 운 분 야	⑦기술부문 건설	종	2개 부문
	⑧전문분야 항만및해안	종	2개 분야
⑨신고연월일	2005년 3월 29일		
⑩신고수리의조건	- 해외시장진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수탁업무(공고된 입찰예의 중여 포함)수행 - 기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에 한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5년 12월 8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11000-21011년
표. 5.12 승인

서울-87호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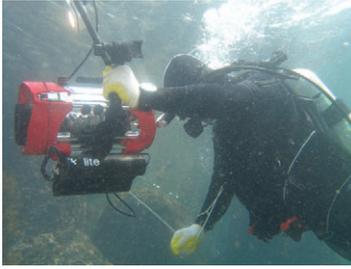
상 호 :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대 표 자 : 배병삼
영업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28-9, 13층
분 야 : 항만분야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30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2007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3.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으로 확대 시행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어항도 시설물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별 지방어항 점검의 한계와 기존 국가어항 안전점검결과 취약시설물 대부분이 정밀점검(수중조사)을 통하여 판단되었으므로, 향후 연차적으로 지방어항도 수중조사장비를 투입하여 정밀점검(수중조사)실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유지관리 시스템도 마련될 것이다.

지방어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어항관리 효율화와 재난요인의 사전 제거는 궁극적으로 현재 안전점검 미실시의 이유가 되고 있는 예산을 오히려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음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어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간 2회 정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에 드는 비용은 모두 합쳐도 20여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의 소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을 피해액을 예상한다면 어쩌면 이는 너무 저렴한 비용 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를 방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향후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안전점검을 위한 법령과 조직의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며, 지방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신속 어항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의 예산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안전점검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어항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면 지방비로 충당하는 실정인데 재정 자립도가 턱없이 취약한 지자

체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양우 개선방안 및 기대요구

가. 개선방안

지방어항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법령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재원을 안정적 확보하여, 국가어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방어항도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다.

※ 국가어항의 경우 05년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함으로써 그간 시설 안전분야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해결되어 내실 있는 점검결과를 도출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어항시설의 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음.

나. 기대 효과

안전점검을 통한 적절한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수계산업의 여건마련하며 또한, 어항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적정기능과 안전을 유지한다.

-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지방어항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신속한 보수·보강체계 지원
- 특수법인 직원이 수행함으로써 법정위탁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협회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공무원과 같이 형법에 의해 처벌) 